

「사무분장 규정」 개정문

개정 2026. 3. 9. · 시행 2026. 3. 9.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규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사무분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를 제5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3(대외협력팀) 대외협력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발전기금 모금전략 수립 및 시행
2. 발전기금 관련 규정 및 법무, 세무에 관한 사항
3. 발전기금 홍보
4. 발전기금 모금행사 기획 및 실무
5. 고액기부자 관리 및 예우
6. 잠재기부자 발굴
7. 발전기금 CMS 관리업무
8. 기부자 관리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
9. 기부금 접수 및 입금자 관리
10. 발전기금 통계 및 분석업무
11. 장학금 및 기부금 집행업무
12. 기부 영수증 처리 및 연말 소득공제
13. 대외협력 및 기관간 협약(MOU) 관리
14. 대외협력 및 발전기금 홈페이지 운영
15. 대학 기념품 통합 제작 및 관리
16. 총동문회 지원 업무
17.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기존 46조에서 5조의3으로 이동 2026.3.9.]

제20조의 제목 "AI융합교육센터"를 "AI융합학생창업센터"로 한다.

제20조 중 "AI융합교육센터"를 "AI융합학생창업센터"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의2

제26조의 제목 "중독케어사업단"을 삭제한다.

제26조 중 "중독케어사업단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5-10-13)"를 삭제한다.

제27조의 제목 "캠퍼스사업단"을 삭제한다.

제27조 중 "캠퍼스사업단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를 삭제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의2(국제처) 국제처에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두며, 각 기관의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어교육센터(Korean Language Education Center)
 2. 글로벌인재지원센터(Global Talent Support Center)
 3. 글로벌교류센터(International Engagement Center)
 4. 글로벌협력센터(Global Partnerships Center)
- 가.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 나. 외국대학과의 교류 협력
- 다. 외국대학과의 합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라. 국제교류 관련 홍보 및 지원
- 마. 교환학생, 해외어학연수, 복수학위, 기타 국제화 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 바.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 사.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 아. 외국인 학생 생활과 진로에 관한 상담 및 지도
- 자. 외국인 학생의 각종 심리검사와 그 결과 분석
- 차. 외국인 학생 생활 연구지의 발간 및 연구발표
- 카. 외국인 학생 수련생 교육 및 실습
- 타. 외국인 학생 학습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 파.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 하.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62조를 제48조의2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의2(실험동물연구센터) 실험동물연구센터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기존 62조에서 48조의2로 이동 2026.3.9.]

제60조를 제48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의3(공통기기실) 공통기기실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교수, 학생 연구지원 및 분석기기 관리·분석 업무
2. 학생 실험실습 지도 업무
3. 교육연구 및 실험실습 공동활용기자재 선정 업무
4. 분석기기 관리
5.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기존 60조에서 48조의3으로 이동 2026.3.9.]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의2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